

●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-81호

「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(부산지방우정청 훈령 제698호)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 월 13 일
부산지방우정청장

「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 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」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: 「2인 관서 실효적 지원방안 추진 계획」에 따른 훈령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훈령명 변경

- 현행: 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 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
- 개정: 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

나. 조문 변경

- 제2조(창구업무 취급시간)
 - 현행: 부산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(출장소, 별정우체국 포함)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[별표 1]과 같다.

- 개정: 부산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(출장소, 별정우체국 포함)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**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,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[별표 1]과 같다.**

○ 제3조(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)

- 현행: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- 개정: 제2조에도 불구하고 **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**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**이 경우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**

○ 제4조(취급시간 공지)

- 현행: ①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,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- 개정: ① 제2조 및 **제3조**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,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
3. 의견제출

「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을 경우, **2024년 5월 2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: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
- 전화: 051-559-3135, 팩스: 0505-005-1451
- 이메일: anoby5@korea.kr

4. 기타사항

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
우편영업과(☎051-559-31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